

2022년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 통합공고

UNIST에서는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공통사항

■ 지원규모 : 총 1,070백만원 (약 33개社 지원)

■ 지원기간 : 2022.06. ~ 2022.12 (7개월간)

※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지원분야	사업명	지원내용	예산 (지방비)
기술 특성화	지역기업 성장지원	<산학 공동 기술사업화> • 대상기업의 제품 기능 등을 기술핵심기관이 직접 기술개선 지원 • 최대 60백만원 × 10개 기업 내외	600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 대상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타 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강화 지원 • 최대 35백만원 × 9개 기업 내외	315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 최대 15백만원 × 4개 기업 내외	60
		<애로기술자문> •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 • 최대 1.5백만원 × 10개 기업 내외	15
경영역량 강화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 특구 내 신사업을 추진하는 혁신역량기업의 기획부터 전주 기 지원 • 교내 연구실, 연구센터에서의 사업 발굴 기획 지원	80

※ 특화분야: 첨단전자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지원절차(공통)

단계	일정	추진내용
모집공고	'22.04.26.	- UNIST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제 -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
↓		
신청서접수	'22.05.13.	-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 및 확정심의 (UNIST, 특구재단)	'22.05.13. ~ '22.05.31.	-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행기업 선정 - 수행기업 선정결과 재단 확정심의
↓		
과제 협약 등	'22.06.02.	- 3자(재단-UNIST-수혜기업 or 특화지원기관) 또는 4자 (재단-UNIST-수혜기업-외부전문기관)협약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사업기간 중	- 과제 추진 현황 확인 - 중간 성과 점검 등
↓		
사업결과점검 및 확정심의 (UNIST, 특구재단)	'22.01.	-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 - 세부과제 결과 및 달성도 재단 확정심의
↓		
세부사업 정산	'22.01.	-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 사업 추진 현황 및 자체 기준 소급 적용 등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비(최대)	사업기간
지역기업 성장지원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60,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35,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5,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애로기술 자문단 운영	1,5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40,000천원	최대 7개월 이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04.26.(화) ~ 2022.05.13.(금) 18:00까지
-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고명성	052-217-1763	mako@unist.ac.kr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김의준	052-217-1764	kej2516@unist.ac.kr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고명성	052-217-1763	mako@unist.ac.kr
애로기술자문단 운영	강민욱	052-217-1765	twentydays@unist.ac.kr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김의준	052-217-1764	kej2516@unist.ac.kr

■ 신청자격 검토사항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 </div>

검토사항	내용
	<p>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p><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p>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p><사후관리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진행 현장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li style="padding-left: 20px;">*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울산울주강소특구 자체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화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도모,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울산 울주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사업내용

- 대상기업 제품의 기능 등을 기술핵심기관이 직접 기술개선 지원
- 대상기업의 제품 애로사항 해결, 공동연구 추진, 공공연구장비 활용 지원 등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600백만원 (대상기업 10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지원사업 신청기업 제출 애로사항 관련 『[별첨1] 기술애로개선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 내 연구자와 기업을 매칭, 기술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전반을 지원

3. 추진체계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지원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의 타당성 및 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행 목표의 타당성 • 대표자 및 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40
전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역량 • 활용 예정 전문기관의 전문성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기술·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지원 성과의 활용 가능성 	30
합 계		100(%)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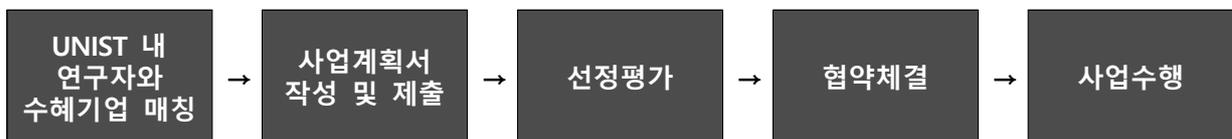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신청방법 및 절차



- 공동연구 추진이 결정되면 『[별첨1] 기술애로개선 수요조사서』 및 『[별첨2]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지원 신청서』 양식을 활용,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사업팀 고명성 (052-217-1763)
 - 전자메일: msko@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기술애로개선 수요조사서 (별첨자료 참조)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⑤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⑥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⑦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별첨자료 참조)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연구자) ③ 연구소기업 등록증 ④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⑤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3

세부지원내용 : 혁신역량 초기기업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화분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도모,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울산 울주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사업내용

- 대상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시제품제작, 해외진출컨설팅, 경영컨설팅, BM 개발, 시장조사, 투자유치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315백만원 (대상기업 9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 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

연번	지원명	상세내용	상한 (단위:천원)	비고
1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제작 지원 - 직접 제작 시, 한도 내 인건비, 재료비 등 계상 가능 	20,000	자체제작 or 외부전문기관 활용
2	제품고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 성능 업그레이드, 디자인 개선, 홍보·광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선 	15,000	외부전문기관 활용
3	경영·기술사업화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M 수립 (기업맞춤형 기술 로드맵) • 기업의 경영·BM설계·세무·회계·투자유치·시장조사·해외진출·ESG경영·내부역량강화 등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000	외부전문기관 활용
4	기술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동향분석, 선행특허조사, 특허방어전략 수립, 특허맵 구성 및 추가 R&D 기획 등 기존 기술 고도화 지원 	15,000	외부전문기관 활용

※ 기업별 최대 35,000천원 이내 비목별 상한 고려하여 예산 편성

3. 추진체계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지원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의 타당성 및 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행 목표의 타당성 • 대표자 및 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40
전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역량 • 활용 예정 전문기관의 전문성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기술·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지원 성과의 활용 가능성 	30
합 계		100(%)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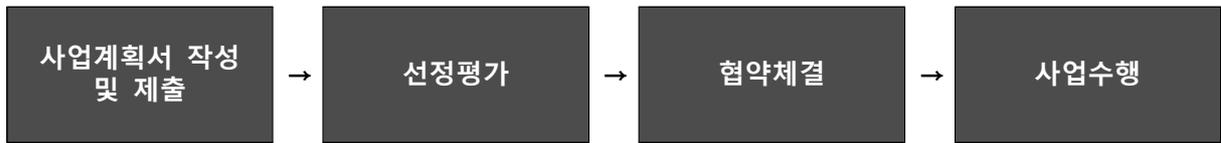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첨3] 혁신역량초기기업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사업팀 김의준 (052-217-1764)
 - 전자메일: kej2516@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③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①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연구소기업 등록증 ③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4

세부지원내용 :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화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도모,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울산 울주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사업내용

-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 평가 및 시험분석이 필요한 기업의 성능 평가 및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60백만원 (대상기업 4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업 제품의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등을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인증·분석 외부전문기관은 대상기업이 자체적으로 선정 후 사업계획서 제출

3. 추진체계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지원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의 타당성 및 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행 목표의 타당성 • 대표자 및 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40
전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역량 • 활용 예정 전문기관의 전문성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기술·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지원 성과의 활용 가능성 	30
합 계		100(%)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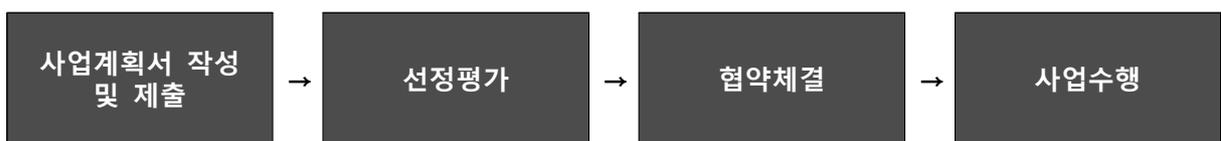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첨4]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계획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사업팀 고명성 (052-217-1763)
 - 전자메일: msko@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③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화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 도모,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울산 울주 강소특구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사업내용

-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point 전문가 자문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15백만원 (대상기업 10개社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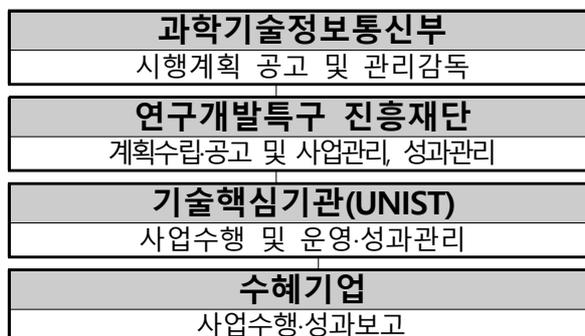
■ 지원대상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① 특화분야기업
 - ※ 특화분야 :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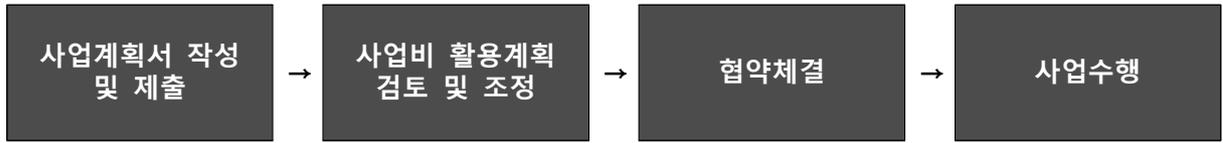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애로기술,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세무, 투자 등 경영분야에 대한 One-point 자문
 - 지원방법: 온·오프라인 자문, 현장방문 등 상황별 운영

3. 추진체계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첨5] 애로기술자문 신청서』를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사업팀 강민욱 (052-217-1765)
 - 전자메일: twentydays@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애로기술자문 신청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화분야 관련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주기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사업내용

-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수요기업 DB를 구축하고, 수혜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수혜기업의 전주기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80백만원 (대상기업 2개社 내의, 기업당 최대 40백만원)

- ※ 상기 예산은 평가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필수요건)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소재지요건) 아래 2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울산울주강소특구내 소재기업
- 울주군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특화분야기업

※ 특화분야 :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지원내용

- 이전한 특허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경영·재무·인사·마케팅·산업 및 시장분석·비즈니스모델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초기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전략 수립 과정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필요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형식으로 활용

■ 지원방법

- 대상기업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 목록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기술사업화에 활용

○ 기업 맞춤형 지원목록

연번	지원명	상세내용	상한 (단위:천원)	비고
1	특허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이전 기술 관련 권리보호 및 확장 등을 위한 특허전략수립 등 	20,000	외부전문기관 활용
2	추가 R&D 기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R&D 기획 지원 - 이전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추가 R&D 전략 수립 - 사업화 관련 기술·시장동향 등 조사 - 이전기술사업화 관련 타겟 R&D 및 사업화 지원사업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15,000	외부전문기관 활용
3	경영·기술사업화 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M수립 (기업맞춤형 기술 로드맵)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컨설팅 기술사업화 관련 법률·회계 자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자료 제작 	10,000	외부전문기관 활용

※ 기업별 최대 4,000만원 이내 비목별 상한고려하여 예산 편성

3. 추진체계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지원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의 타당성 및 계획의 충실성 과제수행 목표의 타당성 대표자 및 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40
전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역량 활용 예정 전문기관의 전문성 	3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기술·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지원 성과의 활용 가능성 	30
합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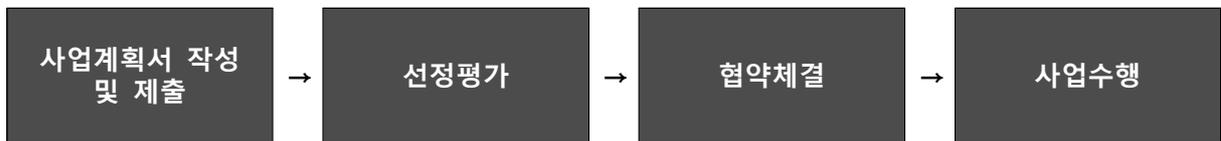
※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이거나, 지역특화분야기업 및 이전 울산울주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최종평가결과가 “우수”인 경우 5점 내외 가점을 부가할 수 있음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첨6] Open Innovation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 기반 선정평가 및 선정 시 협약체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e-mail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사업팀 김의준 (052-217-1764)
 - 전자메일: kej2516@unist.ac.kr
 -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참조)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별첨자료 참조) ③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별첨자료 참조) ④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별첨자료 참조)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구분**

기술 핵심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UNIST (울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제조업 (10~34)	1차 금속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금속 주조업(C243)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C13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전기장비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전자 부품 제조업(C26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화학섬유 제조업(C205)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분류코드

특화분야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미래형 전지 산업	이차전지	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양극/음극소재, 이차전지 고속충전을 위한 전해질 제조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C282) / 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C281) / 전자부품제조업(C262) / 코크스및연탄제조업(C191)/기초화학물질제조업(C201) / 기타화학제품제조업(C204)
	수소전지	수소연료전지분리막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태양전지	유리창 부착형 투명 태양전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탄소섬유 복합재	탄소섬유 복합재 기반 경량 배터리 팩 구조물, 3D프린팅 기반 경량부품 생산장비, 초경량/고강도 프레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화학섬유 제조업(C205)
	무선 전력송신	무선 전력송신 및 충전 모듈, 초저전력 스마트센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C28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